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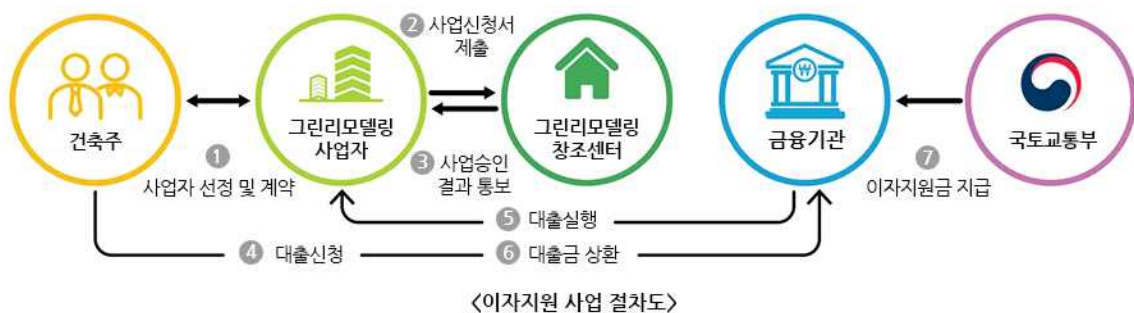
2023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공고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참여를 높이고 민간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2023년도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민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촉진을 위해 공사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도모**
- (추진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 (사업시행자)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건축물관리지원센터TFT)(이하 “센터”)
- (사업기간) 당해 연도 공고일로부터 이자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대해 취급금융기관과 대출약정 체결 시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4%(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차상위계층은 5%)의 이자 지원



< 이자지원 사업 절차도 >

2. 지원 대상 및 기준

□ 지원 대상

- 기존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구상 또는 실행 중인 **모든 유형의 민간사업**

* 既 완료된 사업은 사업신청 및 지원불가

구 분	이자지원 대상 공사범위
필수공사	고성능 창 및 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내외부 단열보강,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조명(LED),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선택공사	Cool Roof(차열도료), 일사조절장치, 스마트에어샤워, 순간온수기 기타 에너지 성능향상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사
추가지원 가능공사	기존공사 철거 및 폐기물처리, 석면조사 및 제거, 구조안전보강, 기타 그린리모델링 관련 건축부대공사, 열원교체에 따른 공사비 또는 분담금, 전기용량증설 등 그린리모델링 관련 전기공사

※ 주의사항

- 필수공사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함
- 정부 지원사업(ESCO 등) 또는 지자체(BRP사업 등)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 금액 이외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한하여 지원

*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내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우선 선정·지원

□ 지원 기준

- 센터가 지정한 에너지성능 평가 프로그램* 또는 간이평가표(단독주택)로 산출한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공동주택)이 3등급 이상인 경우 4%**의 이차지원을 적용

* ECO2, ECO2-OD, GR-E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용 프로그램)

** 개인별 대출 이자율에 따라 최대 연 4% 이내 이자지원

1)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에 따른 지원 기준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절감률)	이자지원율	비 고
20% 이상	4%	개선공사 이전 대비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 이상 절감시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은 개선공사 이전 대비 에너지 요구량 또는 에너지 소요량
(또는 1차 에너지 소요량)의 성능개선 비율로 정함

2)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간이평가표에 따른 지원 기준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간이평가표 절감률 합계*)	이자지원율	비 고
20% 이상	4%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승인 받은 단독주택에 한하여 적용 가능

*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승인 받은 단독주택에 한하여 【별지 8】의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간이평가표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적용 가능

3)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	이자지원율	비 고
3등급 이상 (1~3등급)	4%	(필수요건) 외주부창 2/3이상 교체***시 적용 <1㎡ 미만 창호 제외>

*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에 한하여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적용 가능

**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은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제2022-64호(2022.04.27)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준용함

*** 외주부창 중 미교체 창호는 최근 3년 이내 효율등급 3등급이상 교체 했을 시
적용. 단, 창호 효율등급 3등급 이상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이자지원율 우대

-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에 대해서는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4등급 이상으로 개선할
경우 이자지원율 5% 적용

□ 이자지원 대출 · 상환 기준

구분		대상 금액	거치 기간	총 상환기간	취급 금융기관	건축주 부담이자
비주거		최대 50억원	3년 이내	120개월	신한은행 · 제주은행 · 기업은행 국민은행 · 농협은행	약정이자율 - 지원이자율(4%)
주거	10만	최대 3천만원	-	60개월	우리은행 · 국민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신한카드	
				48개월	신한카드	
				36개월	신한카드	
				12,24개월	롯데카드 · 삼성카드	없음
	단독	최대 1억원	-	60개월	우리은행 · 국민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신한카드	약정이자율 - 지원이자율(4%)
				36,48개월	신한카드	
				12,24개월	신한카드	없음

- 1) 최소한도는 비주거 2천만원, 주거(단독·공동주택) 3백만원이며, 10만원 단위로 신청
- 2) 소득세법상 ‘고가주택(9억원 초과)’ 제외/ 다주택자는 2채에 한하여 신청가능
* 단, 카드사 이용시 고가주택(9억원 초과) 신청 가능하며, 롯데카드·삼성카드 결제시 직계가족 명의 신청 가능
- 3) 사업확인서를 발급받아도 건축주의 신용(신용도·압류·가등기 등)에 따라 대출신청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자예산 조기 소진 또는 대출신청의 사업년도 만기 경과 시 신규대출이 중단될 수 있음
- 4) 비주거는 거치 3년시 7년 분할상환
- 5) 약정기간 만료 전 대출금 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

3. 사업추진 절차

□ 사업신청 절차 및 선정기준

○ (신청절차)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절차도 [붙임 1~2]

- 1단계 : 건축주로부터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센터에 ‘사업신청 서류’ 제출
- 2단계 : 센터에서 사업확인 심사 후,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게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 발급
- 3단계 : 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사업확인서를 첨부하여, 취급 금융기관에 건축주가 대출 가능 여부 조회 후 공사 진행

- 4단계 : 공사 완료 후 건축주로부터 공사 완료 확인을 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센터에 '사업완료 신청 서류' 제출
 - * 카드대출 시 '사업완료 신청서' 제출 후 건축주가 대출실행 가능
 - 5단계 : 센터에서 사업완료확인 심사 후,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게 '그린리모델링 사업완료 확인서' 발급
 - 6단계 : 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완료 확인서를 첨부하여, 취급 금융기관(은행)에 건축주가 대출 실행
 - 7단계 : 금융기관은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에 이자지원금 청구
- (선정기준) 에너지 성능개선비율 등 서면심사를 통해 이자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며 '22년도 이자지원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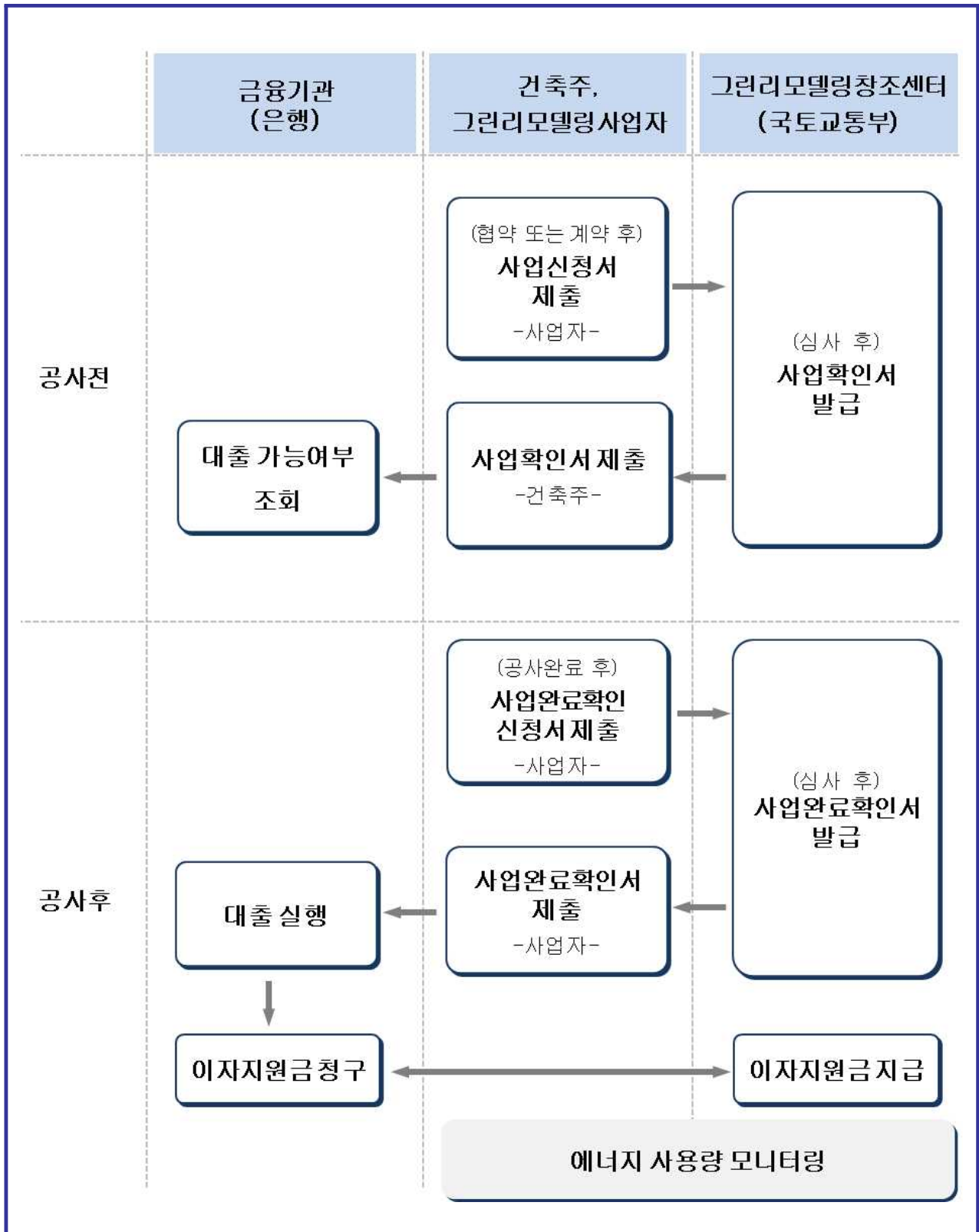
4. 접수방법

-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선착순 접수
 - (사업이 종료될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함)
-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 『사업관리시스템』
- (문 의 처)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 전화번호: 1588-8788 / 이메일: greenremodeling@kalis.or.kr
 - 홈페이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www.greenremodeling.or.kr)
 -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16 (우:52852)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5. 사업설명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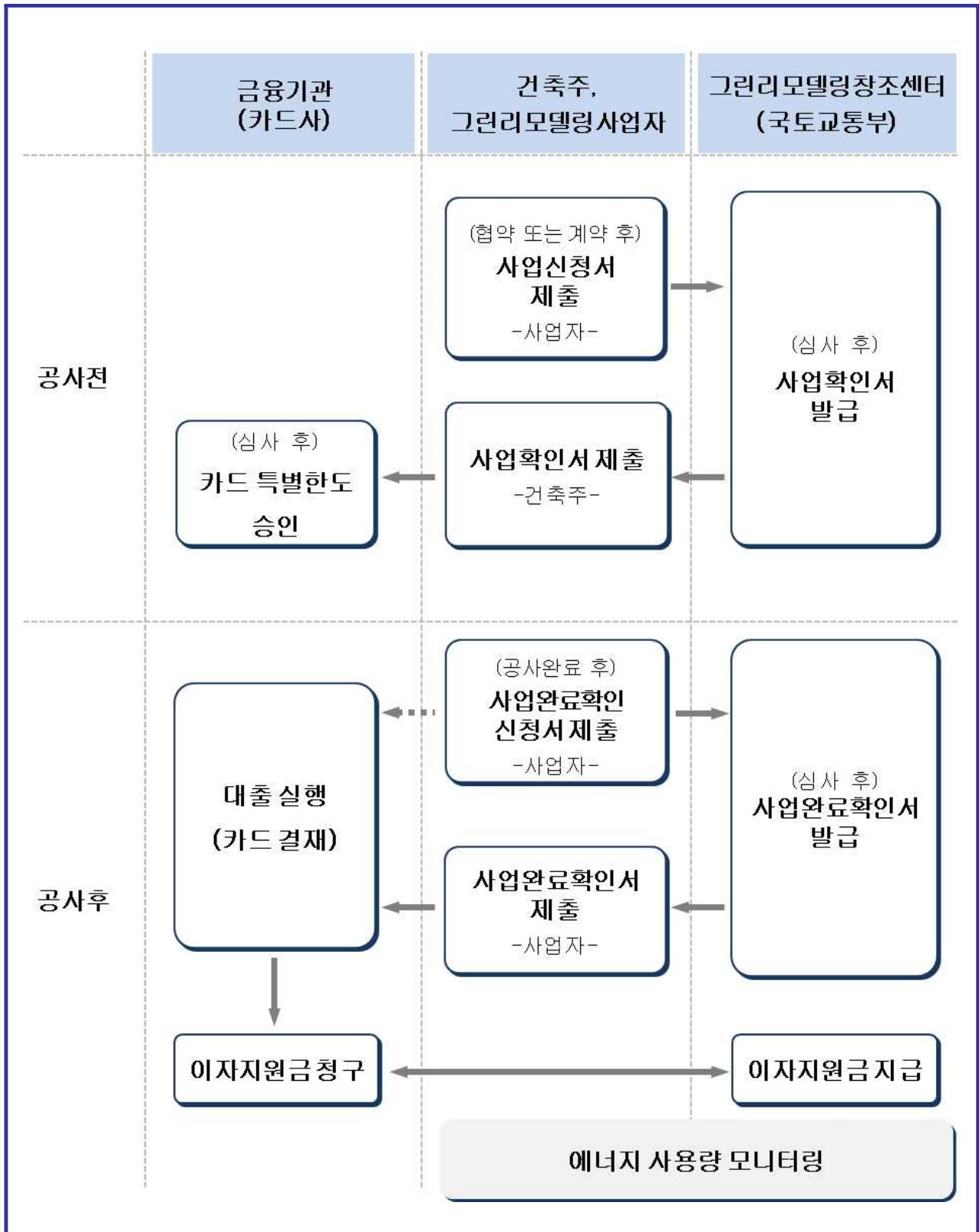
- 민간이자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사업에 관심 있는 건축주 및 사업자(그린리모델링 사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 * 사업설명회 일정 및 장소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함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절차도(은행)



* 비주거 건축물에 한해 대출 금융기관과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선금 지급 가능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절차도(신용카드)



【붙임 3】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신청 시 구비서류

별지 번호	구비서류	추진담당	비 고
1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신청서 ¹⁾	건축주 및 사업자	
2	그린리모델링 자금 대출가능 사전의향서	건축주 및 사업자	· 비주거 건물만 해당 (차주가 은행에 신청)
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²⁾	건축주	· 건축주가 법인인 경우 제출하지 않음
4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서	사업자	
5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공사비 산출근거 제출서류	사업자	
6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산출기준 및 제출서류	사업자	· 개선 전·후 결과보고서 · 에너지 시뮬레이션 파일
기타 구비 서류	등기사항증명서	건축주 및 사업자	· 건물등기부 (등기 미이전 상태일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구비)
	건축물대장	건축주 및 사업자	· 공동주택인 경우는 세대 전유부 건축물 대장
	사업 전·후 설계도서	사업자	
	계약서 또는 협약서	건축주 및 사업자	· 건축주,사업자 공동날인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건축주의 신분증 ³⁾ 또는 사업자등록증	건축주	· 개인인 경우 : 신분증(뒷자리 삭제 후 제출) ·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업자	· 신청서 제출일 현재 가입자 명부에 전문인력 등재 시 인정

1), 2), 3)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 제출

※ 붙임의 제출 서류 양식은 온라인시스템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파일 업로드

【별지 1】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신청서

사업단계	☐ 시공 전 / ☐ 시공 중 * 공사완료 시 신청 불가		건축물PK ¹⁾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개월)					
용도구분	☐ 비주거 / ☐ 주거(단독주택) / ☐ 주거(공동주택)					
주소 및 건축물명						
대출방법	☐ 은행대출 / ☐ 신용카드					
신청인 (사업자)	사업자명			대표자명		
	담당자	담당자명: 메일주소:		사무실 : 휴대전화 :		
신청인 (건축주)	☐ 개인 / ☐ 사업자		연락처			
	건축주명			생년월일		
건축물 현 황	용 도	* 건축물대장 상 용도		준공연도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m ²) * 건축물대장 상 연면적		
	용적률(%)	* 건축물대장 상 용적률		해당연면적(m ²) * 부분 신청 시		
주요 사업 내용	☐ 구조 / ☐ 단열 / ☐ 창호 / ☐ 기계설비 / ☐ 전기설비 / ☐ 신재생에너지 / ☐ 기타: ()					
성능개선 비율	구 분			개선전	개선후	절감률(%)
	☐	에너지 시뮬레이션 () * 프로그램명	에너지 요구량()			
			에너지 소요량()			
			1차 에너지 소요량()			
	☐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공동주택)				등급
☐	간이평가표(단독주택) [별지8]					
총 공사비(원)			성능개선 공사비(원)			사업신청 금액(원)
위와 같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사업신청서 상의 제반 내용에 대한 검증과 책임은 당 건축주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게 있으며, 건축주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가 수행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실태조사 및 에너지 모니터링(사업 완료 후 최소 3년간)에 적극 협조하고,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 사업 결과 등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직인) 건축주 (서명/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장 귀하						
첨부서류 1. 대출가능 사전의향서(비주거만 해당) 4.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7. 사업계획서 2. 계약서 또는 협약서 5. 등기부등본 8. 사업 전·후 설계도면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6. 건축물대장 9. 성능개선 공사비·비율 산출근거 자료						

1) 건축물PK :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http://open.eais.go.kr/>)에서 검색을 통해 기입

그린리모델링 자금 대출가능 사전의향서

대상 차주	사업자		개인	
	(□ 건축주, □ 그린리모델링사업자)		(□ 건축주)	
	사업자명		건축주명	
	대표자			
	연락처	전화) 이메일)		
사업개요	주소 및 건축물명			
	사업기간		총 공사비 (원)	
건축물 현황	용도		준공연도	
	층수		연면적(m ²)	
담보/ 신용	부동산		보증(서)	
	신용		기타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성능개선 공사비(원)		사업(대출) 신청금액(원)	

※ 상기 내용 중 대출 의향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신청인이 제공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사실여부에 대해 은행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시행되는 「2023년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위의 신청자에게 대출가능 사전의향서를 발급합니다. 본 의향서는 은행과 신청자와의 대출 약정 이전에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은행의 잠정적 판단에 근거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향후 실제 대출은 은행 내부의 확정적 의사결정에 따라 실행되지 않거나, 상기 내용과 달리 실행될 수 있으며 은행은 이에 따른 어떠한 손실 보상이나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의향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

지점장

(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처리자: *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명 기입] 은(는)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이용 목적
 - 이자지원 사업 신청 및 관리
- 수집·이용 항목
 - 필수정보 :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유건물, 관리건축물대장PK
 - 선택정보 :
- 보유기간 : 회원의 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기간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이자지원 사업 완료 시까지며, 보유기간은 사업 완료 후 3년간 보관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도 계약은 가능하나 이자지원 사업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음

☐ 본인은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제공받는 자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이자지원 사업 서비스 제공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유건물, 관리건축물대장PK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이자지원 사업 완료 후 3년간
-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자지원 사업 등의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음

☐ 본인은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서

1. 대상 건축물 개요

건축주명		사업자명	
주소 및 건축물명			
준공연도	년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용 도		연면적(㎡)	
사업예정기간	20 . . ~ 20 . . (개월)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 등급		성능개선 공사비	원
ESCO 또는 BRP 사업 등과 연계	▪ 비연계 ☐ ▪ 연 계 ☐ (내용 :)		

2.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 내용요약

분야	개선 전(현재)	개선 후	비고(특이사항)
구조	· ·	· ·	· ·
단열	· ·	· ·	· ·
창호	· ·	· ·	· ·
기계설비	· ·	· ·	· ·
전기설비	· ·	· ·	· ·
신재생 에너지	· ·	· ·	· ·
기타	· ·	· ·	· ·

※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의 해당공종별로 개선 전·후 사항 입력

※ 기재내용에 따라 별지로 추가 작성 가능.

【별지 5】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공사비 산출근거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원가계산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산서
내역서	총괄표 및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공종)별 내역서
수량산출서	도면, 장비일람 등 수량산출서 및 산출 근거제출

- ※ 설계용역비, 시뮬레이션 용역비, 감리비 등에 대하여 센터의 요청 시 계약서 및 산출근거 제출
- ※ 센터는 서면평가 시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사업승인을 거부할 수 있음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산출기준 및 제출서류

구분	이자지원율 산출기준	제출서류
에너지 시뮬레이션*	· 에너지 요구량 또는 소요량 (또는 1차 에너지 소요량)	<개선 전·후> · 에너지 시뮬레이션 파일 · 에너지 시뮬레이션 결과보고서 · 형별성능관계내역 등 · 외피전개도 등 · 외피면적 계산서 등 · 조명 배치 평면도 · 조명밀도계산서 (전기) 등 · 장비일람표(기계·신재생) 등 · 냉방, 난방, 공조 설비 계통도 · 제품시험성적서 등 · 부위별 현황 사진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간이평가표 (단독주택)	· 평가표에 따른 절감률 합산	<필수> · 간이평가표 배점계산서 · 평면도 · 개선 부위별 현황 사진 <해당 시> · 형별성능관계내역 · 외피전개도 · 개선항목 교체비율계산서 · 조명배치 평면도 · 장비일람표(열원·신재생·조명 설비) · 제품시험성적서 또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단, 공동주택**은 단위세대인 경우만 해당)	·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등 (창호) · 평면도(개선 전·후 전체창호 및 교체창호 표기) · 교체 창호 내역서 등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등 (기계·전기·기타) · 개선 부위별 현황 사진

* 에너지 시뮬레이션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지정한 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사용
(지정 에너지 시뮬레이션 : ECO2, ECO2-OD, GR-E(GR사업자용 에너지시뮬레이션))

** 에너지 시뮬레이션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중 결과가 더 유리한 경우를 적용 가능

※ 센터는 서류심사 시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또는 시뮬레이션에 따른 산출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사업승인을 거부할 수 있음

【별지 7】

건축물 부위별 현황 사진

부위별 사진(부위명)	
부위기호	개선 부위명
이미지 파일첨부(컬러사진)	
부위기호	개선 부위명
이미지 파일첨부(컬러사진)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간이평가표(단독주택)

○ 산정방법 : 해당 분야·항목의 지역별 계수(%) × 교체비율(면적기준, %)

분야	성능개선 검토사항		지역별 계수(%) ㉠				교체 비율(%) ㉡	분야별 절감률(%) ㉢=㉠×㉡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단열	벽체-내단열	신축건축물 지역별 법적 단열기준 만족 여부	13.2	9.7	10.5	10.4		
	(외단열)		(16.8)	(13.0)	(13.8)	(12.9)		
	지붕		2.7	2.6	3.1	2.3		
	바닥		4.8	4.5	4.1	3.3		
창호	신축건축물 지역별 법적 단열기준 만족 여부		15.4	13.7	13.4	12.6		
출입문	단열 두께 20mm 이상 문 적용 여부		1.5	1.4	1.6	1.7		
열원 설비	고효율 기기 적용 여부		6.7	7.0	7.1	7.4		
조명 설비	조명기기 LED등 적용 여부		2.3	2.6	2.5	2.9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발전시스템 적용 여부 (발전용량 1[kWp]당)		5.6	5.7	6.5	6.3		
절감률 합계(%)								
절감율 합계 기준(20% 이상) 만족 여부								

※ 신축건축물 지역별 법적 단열기준 및 지역구분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2호('22.1.2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를 따름

※ 고효율 기기는 소비효율 1등급 및 동등이상(91%)효율 제품

※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은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제2022-64호(2022.04.27)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준용함

【붙임 4】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

			등록번호	
신청인 (사업자)	사업자명		대표자	
	담당자	담당자명: 메일주소:	사 무 실 : 휴대전화 :	
신청인 (건축주)	건축주명		연락처	
건축물 현황	주소 및 건축물명			
	준공연도		층 수	
검토 결과	적격여부		사유	
	성능개선 비율/등급		이자지원율	
	대출기간		이자지원 대상금액	
	대출 실행기간		취급은행 (카드사)	
	사업확인서 유효기간			
- 본 확인서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신청서를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사업 확인서 상의 제반 내용에 대한 검증과 책임은 건축주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 있으며 사업의 결과 등과 관련하여 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 건축주의 신용도, 압류, 가등기 기재 등에 따라 대출신청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취급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대상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장 (직인)				

【붙임 5】

그린리모델링 사업변경 신청서

			등록번호		
신청인	사업자명		건축주명		
주소 및 건축물명					
변경 사항	선택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	건축행위			
	☐	사업기간			
	☐	주요 사업내용			
	☐	주소			
	☐	취급은행			
	☐	건축주 (개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건축주 (사업자)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착공일			
	☐	설계완료일			
	☐	사업완료일(준공)			
	☐	이자지원율			
	☐	성능개선 비율(등급)			
☐	이자지원 대상금액		원	원	
☐	기타 변경				
변경 사유					
위와 같이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확인 내용 일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직인) 건축주 (서명/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장 귀하					
붙임. 세부 변경근거					

【붙임 6】

그린리모델링 사업포기 신청서

			등록번호	
신청인	사업자명		건축주명	
주소 및 건축물명				
이자지원 대상금액	금 액		대출실행여부	실행 ☐ / 미실행 ☐
포 기 사 유	선택	항 목	사 유	
	☐	대출 불가		
	☐	건축주와 사업자간 협약 파기		
	☐	기타사항		
위와 같이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포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직인) 건축주 (서명/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장 귀하				

【붙임 7】

그린리모델링 사업포기 확인서

			등록번호	
신청인	사업자명		건축주명	
주소 및 건축물명				
이자지원 대상금액	금 액		대출실행여부	실행 ☐ / 미실행 ☐
포 기 사 유	선택	항 목	적격여부	내 용
	☐	대출 불가		
	☐	건축주와 사업자간 협약 파기		
	☐	기타사항		
위와 같이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포기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장 (직인)				

※ 적격여부는 ○, ×로 표기되며, 부적격 시 내용란에 사유기재.

【붙임 8】

그린리모델링 사업완료확인 신청서

			등록번호	
신청인 (사업자)	사업자명			대표자
	담당자	담당자명: 메일주소:	사 무 실 : 휴대전화 :	
신청인 (건축주)	건축주명			연락처
사업내용	주소 및 건축물명			
	사업기간			
	사업완료일 (준공일)			
	이자지원율	%		
	이자지원대상금액	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발급된 사업확인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이행하였으며 건축주는 이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허위 작성 및 제출 시 이에 따른 제재 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사업완료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직인) 건축주 (서명/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장 귀하				
첨부서류 1. 자금집행내역(세금계산서 등) 2. 설계도서, 산출내역서 3. 설치사진, 설치도면, 산출내역서 4. 기타				

【붙임 9】

그린리모델링 사업완료 확인서

			등록번호	
신청인 (사업자)	사업자명		대표자	
	담당자	담당자명: 메일주소:	사 무 실 : 휴대전화 :	
신청인 (건축주)	건축주명		연락처	
사업내용	주소 및 건축물명			
	사업기간			
	사업완료일 (준공일)			
	이자지원율	%		
	이자지원대상금액	원		
상기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이상 없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장 (직인)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2022.1.28)

(단위 : W/m² · K)

건축물의 부위			지역	중부1지역 ¹⁾	중부2지역 ²⁾	남부지역 ³⁾	제 주 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150 이하	0.17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공동주택 외		0.170 이하	0.240 이하	0.320 이하	0.41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10 이하	0.24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공동주택 외		0.240 이하	0.340 이하	0.450 이하	0.560 이하
최 상 층 에 있는 거실 의 반자 또 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0 이하		0.180 이하	0.2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10 이하		0.260 이하	0.350 이하
최 하 층 에 있는 거실 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 닥 난 방 인 경우		0.150 이하	0.17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바 닥 난 방 이 아닌 경우		0.170 이하	0.200 이하	0.250 이하	0.33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 닥 난 방 인 경우		0.210 이하	0.24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바 닥 난 방 이 아닌 경우		0.240 이하	0.290 이하	0.35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900 이하	1.000 이하	1.200 이하	1.600 이하
		공 동 주 택 외	창	1.300 이하	1.500 이하	1.800 이하	2.200 이하
			문	1.5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300 이하	1.500 이하	1.700 이하	2.000 이하
		공 동 주 택 외	창	1.600 이하	1.900 이하	2.200 이하	2.800 이하
			문	1.900 이하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및 방화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및 거실 내 방화문			1.4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800 이하			

비 고

- 1)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